



코히아 테라스 스쿨

학군 내 지원자를 위한
공증진술서

경고: 진술서의 허위작성은 범죄행위 입니다.

뉴질랜드 교육부는 주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의도적으로 학군 내 지역에서 임시 거주 함으로서 부당하게 입학 우선권을 확보코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학부모님께서 숙지하시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:

- 단기간 동안 학군 내의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
- 친척이나 친구 집에서 임시로 하숙 하는 행위
- 향후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도 없이 학군 내에 거주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주소를 편법으로 이용하는 행위

입학지원 시 제출한 학군 내 주소에서 학생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되고 입학을 위해 부당하게 우선권을 확보할 의도로 학군 내 임시 주소를 이용하였다고 판단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학교 이사회는 해당 학생의 등록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. 학부모가 10 일 이내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는 한, 학교 이사회는 해당 학생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등록 취소는 교육법 제 110A 조의 규정 (110A of the Education Act 1989)에 따라 이루어집니다

학교는 어떤 경우든지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며 여기에는 가정 방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
본인, 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진술합니다.

학부모/법정보호자의 성명(바른 글씨체로)

1. 본 지원서에 포함된 내용은 명백히 사실이며 정확합니다.
2. 내 자녀가 현재 통상적으로 거주하는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:

.....
나는 학군 내 선발기준에 따라 입학이 허가된 학생이 코히아 테라스 스쿨 재학기간 중 학군 지역 내에 거주하여야 함을 이해하였습니다. 학군 내 지역으로부터 이사를 할 경우 해당 학군 내의 학교로 전학하는 데 동의합니다.

나는 본 내용에 틀림이 없음을 선서 및 진술에 관한 법률 1957(Oaths and Declarations Act 1957)에 따라 분명히 진술합니다.

일자: 2009 년 월 일, 오클랜드에서

서명:
(학부모 또는 보호자)

서명: 스탬프:
(JP 또는 변호사)

성명: 주소:
(공증진술 시행을 허가 받은 자의 인적 사항-바른 글씨체로)

아래 조건을 만족하였을 때 학교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:

- 모든 사전등록 절차를 마치고 학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입학을 허가한 후,
- 해당 학생이 학교 출석을 시작하였을 때. 즉, 학생의 등교시까지 학교 등록은 유효하지 않습니다.

학교등록은 다음요건에 적합할 때에 한하여 유효합니다.

- 사전 등록 시 제출한 인적 사항의 변경내용을 학교에 서면으로 통보.
- 학교에 서면으로 통보한 인적 사항의 변경 내용이 입학 규정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. 즉, 사전등록 시 학군 내 학생으로 입학이 허가된 학생은 등교를 시작할 때 반드시 학군 내에 거주하여야 함.
- 사전 등록 당시 제출한 인적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어야 함.